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7
------	------

제출일자 : 2024. 4.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정비(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비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 변경(안 제5조제4항제1호)
-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정비(안 제7조제2항)
- 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6. ~ 2024. 3. 26):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
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를 “건축
기계설비”로,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
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
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
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
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 -----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③ (생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 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 기술자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건축기계설비 ----- ----- 건설기술인 중 고급 기술인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⑤ -----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략)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 -----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 ----- ----- ----- ----- ----- -----
1. 위험 등급: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1. -----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 등급: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2. -----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등급: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시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에는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 -	
주소: (-)		직장전화: () -	
		휴대전화: () -	
		F A X: () -	
소 속	직 급	E-mail:	@
원문분야: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계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하천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1. 행정정보 공유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본인은 이 신청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이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에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목적: 공인구분 0000(회원관리) ※ 수집이용 목적 - 위험도 평가단원 관리 - 위험도 평가단 활동과 관련된 보필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 직급,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종료일로부터 위험도 평가단원 말소까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따른 불이익의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이 없으시 위험도 평가단원 활동 정보 제공 및 보필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본인은 「전자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말소)을 ()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청 인: (인)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3. ----- 별지 제5호 서식 -----

④ -----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 -	
주소: (-)		직장전화: () -	
		휴대전화: () -	
		F A X: () -	
소 속	직 급	E-mail:	@
원문분야: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계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하천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1. 행정정보 공유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본인은 이 신청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이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에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목적: 공인구분 0000(회원관리) ※ 수집이용 목적 - 위험도 평가단원 관리 - 위험도 평가단 활동과 관련된 보필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 직급,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종료일로부터 위험도 평가단원 말소까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따른 불이익의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이 없으시 위험도 평가단원 활동 정보 제공 및 보필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본인은 「전자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말소)을 ()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청 인: (인)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사진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평 가 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평 가 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2호서식]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사진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평 가 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평 가 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사업비(경비지원 등)로 예상되는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고세훈
연 락 처	2627 - 231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 ③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 및 관리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는 등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최소 20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 범위에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구의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 지역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 ⑥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지역본부장이 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어건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등급: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사용제한 등급: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사용가능 등급: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에는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 지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및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